



Vol. 11

2021.11.17.

Customs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545-5115

F. 02-3444-5115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정인전임 jipark@hjcustoms.co.kr

CONTENTS

I. 법령 개정사항

II. 입안 예고

III. 조세심판원 사례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1) 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수입식품과 관련된 각 단계의 안전관리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해외제조업소의 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 업소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 |
|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 폐지 |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를 폐지 |
|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3) 시행일

'21.10. 01.

I. 법령 개정사항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해외제조업소 등록 기준 정비 |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에 허가·등록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소의 인증 절차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소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요건을 갖추고, 인증신청서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도록 규정 |
| 조건부 수입 검사 제외 대상의 축소 | 종전에는 최근 2년 이내에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수입식품 등은 모두 조건부 수입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식품 등의 제조·가공 등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만 조건부 수입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 구분 | 내용 |
|--------------------------|---|
| 동일사 · 동일수입식품 등에 대한 요건 완화 | 종전에는 수입식품 등을 최초로 수입하면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5년간 해외제조업소 및 제품명 등이 동일한 식품 등을 동일사 · 동일수입식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5년간 동일사 · 동일수입식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 |

(3) 시행일

'21.10. 01.

I. 법령 개정사항**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1) 개정 이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의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않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상한액이 상향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u>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조정</u> |
| 폐기물 수출자의 하역 및 통관 정보 입력 기간 연장 | 폐기물 수출자가 수출폐기물의 하역정보 및 통관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기간을 수입국에서의 정보 제공 기간을 고려하여 하역 및 통관 완료일부터 2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 |

(3) 시행일

'21.10.02.

I. 법령 개정사항**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1) 개정 이유**

전염병 목록에 일부 항목을 추가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 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제1종가축전염병 목록 추가 | 살처분을 명해야 하는 제1종가축전염병에 뉴캣슬병을 추가 |
| 제3종가축전염병 목록 추가 | 야생동물의 수입 등으로 인한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3종가축전염병에 토끼출혈병·토끼점액종증·야토병을 추가 |
| 오염우려물품 목록 추가 | 격리·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오염우려 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포함 |
| 검역증명서 미첨부 |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지정검역물의 수입 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으로 반입되어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밀봉처리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것을 포함 |

(3) 시행일

'21.10. 14.

I. 법령 개정사항**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1) 개정 이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적용제외 대상 내 안전관리 대상 물질 추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을 추가 |
| 조치명령 대상 확대 |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미등록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 미등록화학물질의 하위 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추가 |
|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자료 제공 |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3) 시행일

'21.10. 14.

I. 법령 개정사항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관한 등록·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제공 요청 자료의 내용 등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 물질을 선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 추가 | <p>1) 고분자화합물의 위해성에 관한 완화된 국제 기준을 반영</p> <p>2) 종복자료의 제출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질승인이 신청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p> |
| 허가물질의 지정 절차 | <p>1) 환경부장관이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p> <p>2) 선정된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유해성, 용도 및 노출정보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 검토를 하도록 규정</p> <p>3) 화학물질의 명칭, 허가물질을 지정하는 이유 등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p> |

| 구분 | 내용 |
|------------------------|--|
|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제공의 요청 |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관한 등록·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장에게 화학물질의 품명·규격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 업무 위탁기관의 변경 |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에 위탁 |

(3) 시행일

'21.10. 14.

I. 법령 개정사항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을 정하고, 유해성심사 결과를 통지받은자의 의견 제출 허용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 생략 가능 자료 | 고분자화합물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질승인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을 규정 |
| 유해성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 유해성 심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유해성심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

(3) 시행일

'21.10. 14.

I. 법령 개정사항

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의약품의 제조판매 · 수입 품목허가 등을 하거나 품목신고 등을 수리하는 경우 의약품의 안정성에 관한 자료만을 검토하는 때에는 종전보다 그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자료 제출의 의무화 | 전문의약품에 대해 제조판매 · 수입 품목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 |
| 임상시험계획의 변경 관련 내용 추가 및 대상 전환 | 임상시험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이었던 시험군 · 대조군의 추가, 임상시험 종료기준의 변경 및 임상시험대상자에 대한 투약방법의 변경 등을 변경보고 대상으로 전환 |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의약품 생산실적 · 수입실적 보고 대상 제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따라 의약품의 생산실적 · 수입실적 보고 대상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 |
| 처리 기한의 단축 | 의약품의 제조판매 · 수입 품목허가 등을 하거나 품목신고 등을 수리하는 경우 의약품의 안정성에 관한 자료만을 검토하는 때에는 종전보다 그 처리기한을 단축 |

(3) 시행일

'21.10. 14.

I. 법령 개정사항

9.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의료기기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 등을 위해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해당 허가 신청 등을 철회한 경우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품질책임자 자격 요건 추가 | 의료기기 제조소에 두어야 하는 품질책임자 의 자격 요건에 「자격기본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인한 의료기기 RA(Regulatory Affairs) 전문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추가 |
| 의료기기 생산 또는 수입 중단 시 보고 |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의 생산 또는 수입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생산 또는 수입의 중단사유·중단량·중단일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
| 분실사유서 제출 |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증·인증서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인증서 또는 신고증 대신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폐업신고 불편을 해소하도록 규정 |
| 수수료 반환 규정 | 의료기기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 등을 위해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해당 허가 신청 등을 철회한 경우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3) 시행일

'21.10. 14.

I. 법령 개정사항

10. 「약사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시행 법령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약의 날 지정 |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 제출 서류 규정 및 품목허가신청 품목개수 제한 |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에 작성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품목허가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을 최대 3개로 제한 |
| 허가 제한기간 규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 제한기간을 5년으로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 제한기간을 3년으로 규정 |
|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의무 명시 |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임상시험의 안정성 정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 근거와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 |
| 의약품 심사 또는 검토 결과 공개 |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의약품의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 |

| 구분 | 내용 |
|-------------------------|---|
| 증증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 목적인 의약품 | 증증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 목적인 의약품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안전성·유효성 확증을 위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 원료의약품의 해외제조소 등록 | 원료의약품 수입의 경우에도 해외제조소를 등록하도록 규정 |
| 판매자격 없는 자로부터의 전문의약품 취득 |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자격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 장애인 사용 의약품 | 장애인의 의약품·의약외품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약품 등 안전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 |
| 국가출하승인 의약품 |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및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p> <p>2)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에 국가출하승인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부과 사유로 추가하고, 과징금 상한을 해당 품목 판매금액의 2배로 개정</p> |

(3) 시행일

'21.10. 21.

II. 입안 예고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시판 후 조사 제도 개선 및 의료기기 봉함제도 도입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소의 시설기준 개선 등 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시판 후 조사 면제 대상 및 조사계획서 승인 등 | <p>1) 시판 후 조사 면제대상을 1·2등급 신개발 의료기기와 국외 사용경험이 충분한 의료기기로 규정</p> <p>2) 시판 후 조사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업자는 시판 후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p> <p>3) 시판 후 조사계획서 승인일로부터 시판 후 조사결과 등을 첨부하여 정기적(최초 1년 까지: 6개월마다, 1년 이후: 1~2년마다)으로 보고하도록 규정</p> |
|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요건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 <p>1)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교육기본계획을 제출하고 교육운영기준 및 교육계획 수립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p> <p>2) 거짓·수료증 발급이나 준수사항 위반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처분 기준을 마련</p> |

| 구분 | 내용 |
|--------------------------|--|
| 봉함 의무대상 및 위반 시 처분 등 규정 | 인체에 삽입되거나 접촉되는 의료기기 중에 이를 발생이 많았던 주사기·주사침, 콘택트렌즈, 멸균 의료기기 중에 분할 판매 시 문제가 발생되는 창상피복재 등을 봉함 의료기기로 규정 |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소 시설기준 등 개선 | <p>1)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작업소, 시험실, 창고 등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의무를 제외</p> <p>2) 소프트웨어 제조 등을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장소와 시설 및 장비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p> |

(3) 의견수렴기간

~ '21.11.23.

II. 입안 예고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허가 제출자료 제공대상 정비 | 수산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등 신청인의 요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제출자료 제공대상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 |
|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검체분석 허용 |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임상시험 검체분석 항목에 한하여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별도 지정 없이 해당 임상시험검체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 실시 및 검체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 조건부 허가 및 우선심사 운영절차 등 마련 | 품목 조건부 허가, 우선심사 대상 지정, 조건의 이행 결과보고 등의 세부 운영절차,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규정 |
| 의약품 허가(신고) 심사결과 공개절차 등 마련 |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이후 그 심사(검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심사(검토) 결과 공개 등 대상, 공개 절차·방법 등을 규정 |

(3) 의견수렴기간

~ '21.12.20.

II. 입안 예고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있는 마약류 허가 등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각각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취급자 허가, 수출입·제조(변경)허가, 품목(변경)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 |

(3) 의견수렴기간

~ '21.11.29.

III. 조세심판원 사례

1. 쟁점물품을 HS 제8541.40호의 발광다이오드로 분류할지, HS 제8512.20호의 차량용 조명기구로 분류할지 여부 등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5.4.2.부터 2018.3.15.까지 특수관계자인 OOO 본사로부터 구매한 LED(발광다이오드)에 대해 처분청은 기업심사를 실시하였고, 기업심사 결과, LED 중 모델명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번호는 HSK 제8541.40-2090 호(발광다이오드, WTO 협정세율 0%)가 아니라 HSK 제8512.20-1010호(자동차용 조명용 기구, 기본세율 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함.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6.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나,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전에 과세한 건은 제외하고 품목분류 및 가산세 관련 부분은 불채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각하로 각 결정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 경정·고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거부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과세 처분 타당)

다음의 사유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8541호가 아니라 제8512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관세율표 제8541호에 분류되는 반도체 디바이스에는 광전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별소자 이외에 다른 능·수동소자가 함께 결합된 물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2)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건에 대하여 2018.10.23. 그 품목번호를 제9405호로 회신하였다가 2019.4.5. 종전과 달리 제8512호로 회신한 것은 청구법인이 해당 물품의 용도를 기타 조명용에서 차량용 조명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동일 용도의 LED 모듈이 제8512호에 분류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사례가 다수 있었고 쟁점물품이나 동일 용도의 유사물품이 제8541호에 분류된다는 관세관청의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확인과정 없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41호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3) 결정일

2021.09.23. (조심 2021 관 0033)

III. 조세심판원 사례

2. 쟁점물품이 HSK 0710.80-2000호(기본관세율 27%)의 냉동마늘인지, 아니면 HSK 0712.90-1000호(WTO협정 관세율 360%)의 건조마늘인지 여부 등

(1) 주요내용

가. '000'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2018.10.8. 000에 소재한 000로부터 00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000의 쟁점물품을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냉동마늘이 분류되는 HSK 0710.80-2000 호(기본관세율 27%)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를 결정하지 못하고 2018.11.6. 이를 수리함.

나. 쟁점물품은 000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HSK 0712.90-1000 호[WTO 협정관세미추천(W2)세율 360%]의 건조마늘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8.11. 청구인에게 부족세액인 관세 000원, 가산세 000 원 합계 000 원을 경정. 고지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 부과처분 취소 및 심판청구 기각

다음의 사유에 따라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1) 쟁점물품은 냉동마늘과 달리 표면이 쭈글쭈글하고, 표면 색상이 냉동마늘과 달리 담황색을 띠고 있고, 내부 육질 등이 상이한 점, 신선마늘의 장기 저장을 목적으로 사전에 건조한 예건마늘의 수분함량에 비해 쟁점물품의 수분함량이 더 낮은 것은 수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제0712호 품목분류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증발한 것·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 등

2)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된 후, 처분청 소속의 세관 분석실 및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를 결정하지 못한 점,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의뢰를 받았으나, 쟁점물품을 건조마늘로 분류하기까지 약 22 개월이 소요된 점, 입법자 및 관세당국이 건조마늘의 수분함량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물품을 건조마늘로 분류하여 신고하지 않은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3) 결정일

2021.10.06. (조심 2020 관 0188)

III. 조세심판원 사례

3.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AAA 의 자회사인 BBB 이 투자한 법인으로 2001.5.31.부터 2011.8.1.까지 쟁점라이센서와 국내에서 완제품 담배를 제조 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 및 수정계약("쟁점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라이센서에게 국내에서 판매된 완제품 담배 순매출액의 일정비율(브랜드에 따라 상이)을 권리사용료("쟁점로열티")로 지급함.

나. 청구법인은 2014.7.4.부터 2015.12.31.까지 AAA 계열사 등으로부터 담배 완제품의 원재료인 각초(Cut filler, "쟁점①물품"), 각초의 원재료인 숙성되거나 가공된 담뱃잎("쟁점②물품") 및 각초와 결합되는 필터 등 부재료("쟁점③물품")를 수입하면서, 쟁점로열티에 대한 가산율을 산정하여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2014년 수입신고분)하거나,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2015년 이후 수입신고분)하였다가,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이를 다시 가산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의 관련성 미충족 등으로 가산금의 환급금에 대해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기각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0. 등에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다음의 사유에 따라 쟁점로열티 전액이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미충족한다는 것을 전제로 관련 세액 전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1) 처분청의 안분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제외 불가하여 정당한 세액의 존부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처분세액 전부를 취소하였던 점, 쟁점로열티 중 영업비밀 등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③물품 중에는 상표가 부착된 물품도 다수 존재하여 쟁점로열티에서 상표권 사용료 전체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2) 쟁점판결은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이므로 정당세액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으나, 이 건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정당세액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세액을 입증하지 아니한 채 쟁점로열티 전액에 대한 처분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던 점 등

(3) 결정일

2021.10.06. (조심 2020 관 0092)

III. 조세심판원 사례

4. 현장면세되어 반출된지 30 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일반수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20.2.11. 및 2020.2.18. 쟁점수출자로부터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하여 실험실용 시약(이하 “쟁점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기표지상 물품가격이 미화 00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별도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현장에서 이를 면세처리함.

나. 청구법인은 2021.1.7.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은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미화 000임을 이유로 자진하여 수입신고하겠다고 하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이하 “협정관세”라 한다) 적용신청을 하)하였으나, 처분청은 반출일로부터 30 일이 경과되어 재반입 수입신고대상이 아니며,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으로 부과고지대상에 해당하므로 FTA 관세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경정고지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다음의 사유에 따라 처분청이 수입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관세청장이 정한 우편물 고시 제 18 조는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위 고시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자진신고 및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2021.1.7.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의사를 처음으로 밝힌 2020.11.19. 또한 이미 물품반출일로부터 9 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인 점 등

2) FTA 관세법 제 8 조 및 제 9 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신고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렇다면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수입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

(3) 결정일

2021.10.07. (조심 2021 관 0038)

III. 조세심판원 사례

5. 청구법인이 90 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한 쟁점처분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5.7.30.부터 2019.4.16.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이하 “HSK”) 제 7020.00-1013 호(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것, 기본세율 3%)로 하여 수입통관 함.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적정여부 심사결과, 쟁점물품이 HSK 제 7020.00-1019 호(석유유리로 만든 그 밖의 공업용 제품,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20.7.22. 3 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수입신고 등에 대하여 경정고지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4. 처분청에 쟁점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0.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각하

다음의 사유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보임.

1) 쟁점이의신청은 「관세법」 제 38조의 3 제 3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아니라 같은 법 제 132 조에 따른 쟁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대하여 90 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경정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각각 215 일 및 163 일이 경과한 2021.2.24.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보이는 점

3) 다른 업체의 심사청구로서 품목분류는 제 7020 호가 적법하더라도 해당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그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므로 이를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라 볼 여지도 없는 점 등

(3) 결정일

2021.10.08. (조심 2021 관 0072)

III. 조세심판원 사례

6. 쟁점물품을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제 3926 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철강으로 만든 뜻’으로 보아 제 7317 호로 분류할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20.10.6. 000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 으로 단열재 고정용 파스너(Insulation Fastener, 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 제 3926.90-9000 호(WTO 양허관세율 6.5%, 이하 “제 3926 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나. 청구법인은 2020.11.19.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2 개 이상의 구조로 된 철강으로 만든 뜻’이므로 HSK 제 7317.00-1029 호(WTO 양허관세율 0%, 이하 “제 7317 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000 원 및 부가가치세 000 원 합계 000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7. 이를 거부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다음의 사유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 731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쟁점물품은 플라스틱제 자루부분에 철강제 뜻이 결합된 형태의 물품이므로 통칙 제 1 호를 적용할 수 없고, 통칙 제 3 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통칙 해설 제 3 호 나목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중량 및 가격 등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부분의 중량 및 가격이 철강제 뜻보다 약 2.7 배 내지 약 4 배가 많은 점, 쟁점물품은 망치나 해머가 아닌 오로지 타정기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제 자루부분과 함께 벽면에 고정시키므로 일반적인 ‘뜻’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2) 쟁점물품은 건물 벽면에 단열재를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인데, 단열재를 건물 벽면에 고정 또는 지지하는 기능은 플라스틱제 자루부분이 수행하고, 쟁점물품의 관통홀이 철강제 뜻의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므로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은 플라스틱 자루부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3) 결정일

2021.10.07. (조심 2021 관 0039)

III. 조세심판원 사례

7.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제공한 쟁점귀금속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귀금속의 가격이 아닌 리스비용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물품의 주요 원재료인 쟁점귀금속은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와 리스(lease)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쟁점귀금속을 무상으로 제공함. 청구법인은 2015.6.2.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생산지원비용으로 리스계약 체결 당시 쟁점귀금속의 국제시세를 기초로 한 쟁점귀금속의 가격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함.

나. 청구법인은 2020.5.27.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생산지원비용은 쟁점귀금속의 가격이 아닌 리스비용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쟁점귀금속의 가격을 가산함에 따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관세 OOO 원 및 부가가치세 OOO 원 합계 OOO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0.7.27.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 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0.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임차된 물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1) 쟁점귀금속의 가격은 쟁점물품의 가격 중 000%를 차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 와 체결한 리스 기본계약 제 6 조에서 쟁점귀금속에 대한 소유권은 OOO 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으로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쟁점귀금속의 소유권까지 청구법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2) 「관세법 시행령」 제 17 조 제 5 호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

(3) 결정일

2021.10.13. (조심 2020 관 0185)

III. 조세심판원 사례

8. 쟁점해체비용을 포장비용 및 운송관련비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5.7.30.부터 2019.4.16.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품목분류를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이하 “HSK”) 제 7020.00-1013 호(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것, 기본세율 3%)로 하여 수입통관 함.

나. 처분청은 쟁점해체비용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 후 제척기간 내 경정고지함.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각하하였고, 청구법인은 90 일 이내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음. 그 외 일부 쟁점해체비용에 대하여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다. 청구법인은 상기 처분에 모두 불복하여 2021.4.12..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다음의 사유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해체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쟁점판매자는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물품을 해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체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조건으로 쟁점판매자의 공장 내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물품의 해체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는 쟁점물품의 가격(또는 가치)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가산요소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간접지급 금액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2) 청구법인은 이미 해체 된 중고 반도체 장비나 해외 수출자 해체조건으로 중고 반도체 장비를 수입할 때에 해체비용을 포함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가 과세가격을 구성한다는 점은 명백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 신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

3) 쟁점부과처분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 1 차 발급신청을 하여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다른 쟁점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제 1 차 거부처분일부터 132 일이 경과한 후에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제 1 차 거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3) 결정일

2021.10.14. (조심 2020 관 0179)

III. 조세심판원 사례

9. 쟁점물품에 대한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 회신지연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6.1.25.부터 2018.8.13.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라 쟁점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율 0%를 적용 함.

나. 처분청은 원산지자율점검 통지 이 후 2019.4.10.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았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함. 처분청은 위와 같은 독촉에도 관세당국이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가 ‘불충족’된다는 취지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와 함께 과세전통지 및 경정고지를 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심판청구를 제기함.

(한편, 처분청은 관세당국으로부터 회신기간 이후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는 진본이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검증결과를 회신받아 청구법인이 가산세 면제 등을 청구한 처분에 대해 승인함)

(2) 결정요지 : 부과처분 취소

다음의 사유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전국봉쇄 · 이동제한 · 공공기관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진 사실이 방송·신문보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조치는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 물품 생산자, 수출자 등이 통제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2) 전국봉쇄 등의 상황으로 인한 OOO 관세당국의 쟁점물품에 대한 검증결과 회신지연은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

(3) 결정일

2021.10.20. (조심 2021 관 0014)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1. SOUND BA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품명 | ALL-IN-ONE SOUND SYSTEM; AK T1 |
| 물품 설명 | TV나 스마트폰 등에서 출력되는 전기신호를 받아 음향신호로 증폭. 출력하는 막대 형상의 복합형 스피커(사운드바)와 보조 스피커(서브우퍼), 조절기 등이 하나의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 |
| HS CODE | - 변경 전 : 제8519.81-2900호 - 변경 후 : 제8518.22-0000호 |
| 변경 사유 | 사운드바의 주된 기능은 스피커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 8518.22-0000호에 분류 (제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시행일

'21.10.28.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2. 1.8인치 TFT LC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품명 | 1.8인치 TFT LCD; C018CAN01 |
| 물품 설명 | 차량용 전방표시장치(HUD; Head Up Display)에 결합되어 영상 정보를 표시하는 1.8인치 TFT-LCD 모듈로, 구동(Driver) IC와 인쇄회로기판(FPCB) 등이 부착되어 있음 |
| HS CODE | - 변경 전 : 제8512.20-2090호 - 변경 후 : 제8529.90-9990호 |
| 변경 사유 | 제시된 LCD 모듈 상태에서는 제한된 정보를 표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8529.90-9990호에 분류(제2021년 제4회 관세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시행일

'21.10.28.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3. Segment 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품명 | LCD(TTA2A2458) |
| 물품 설명 | 자동차 공조기(air conditioner) 제어판에 부착되어 공조기 상태 정보를 표시하는 Segment 방식의 단색 투과형(transmissive) LCD 모듈로, 23개의 전기접속자와 편광판이 결합되어 있음 |
| HS CODE | - 변경 전 : 제8512.20-2090호 - 변경 후 : 제8531.20-1000호 |
| 변경 사유 | 차량 내부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장치에 사용되는 시각표시반은 제8512호의 시각신호용기기의 범주로 볼 수 없어 제8531.20-1000호에 분류 (제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시행일

'21.10.28.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4. ASHTRA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품명 | ASHTRAY ASM-F/FLR CNSL ; 94579619 |
| 물품 설명 | 차량용 컵 홀더에 끼워 거치하여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소형 채널이(크기 : 70mm*110mm) |
| HS CODE | - 변경 전 : 제3926.30-0000호 - 변경 후 : 제3926.90-9000호 |
| 변경 사유 | 차체의 부착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제3926.90-9000호에 분류 (제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시행일

'21.10.28.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1. 정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함.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非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서, 서명국의 무역규모는 5.6조불(전세계 대비 31.9%), GDP 26조불(전세계 대비 30.8%), 인구 22.7억 명(전세계 대비 29.7%)에 달하는 규모임.

RCEP 서명국 정상은 '20년 정상회의에서 협정에 최종 서명하였고, 각국이 RCEP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내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선언한 바가 있음.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준 동의안 제출을 준비하여 왔으며, 관계부처,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금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됨.

협정문에 따르면,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非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를 기탁처인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60일 째에 발효하게 되고, 이때 기탁서를 제출하지 않은 서명국에 대해서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음. 정부는 서명국들과 비준상황을 공유하며 RCEP의 조기 발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임.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2. 태국 발행 '한-아세안FTA' 특혜C/O 상 전자서명 및 인장 시행 안내

태국 측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태국 수출물품(TH→KR)의 '한-아세안' 특혜 C/O 발급시에 전자서명 및 인장이 전면 시행됨을 통보함.

* 시행일자: 2021. 10. 4.

3. 인도의 「한시적 C/O 사본 인정」 지침 안내

인도의 '코로나 기간 중 한시적 C/O 사본 인정'과 'C/O 사본 제출 등과 관련 한 담보 완화'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

[배경]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애로 예방을 위해 인도 관세·간접 세위원회(CBIC)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원산지 증명서(C/O) 사본을 인정해 줄 것을 제안함. 이에 대한 인도 측의 긍정적 답변과 함께, 관련 세관 세칙을 확인하였음

[한시적 C/O 사본 등 인정] 코로나 기간 중 인도에서 잠정신고제도(관세법 제18조)를 활용하면 C/O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전자 서명본 또는 서명되지 않은 C/O를 제출하여도 통관이 가능하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 일반세액과 특혜세액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 제공 ⇒ 원본 보완 후 담보 해제

[담보 면제·감경] 위와 같은 경우 해당 물품이 원산지검증(CAROTAR) 대상이 아니고 원산지 및 물품가격 허위신고 우려가 없는 등 원산지 위험이 낮은 경우 관련 담보제공 완화 가능

[담보 조항 완화 내역]

AEO T3 업체) 담보 면제

AEO T1·T2 업체, 일반 업체) 세관 책임자(commissioner) 재량에 따라 담보 면제 가능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4.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21.10.26.(화) 화상으로 한-필리핀 FTA 타결선언식과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을 개최하였음.

2017년 신남방정책 선언 이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0.11월 서명), 인도네시아('20.12월 서명) 등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등 신남방 주요 국가들과의 다자·양자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였음.

[한-필리핀 FTA 추진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21.10.26.(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음.

'19.4월 한-필 통상장관간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 차원에서 한-필 양자 FTA 추진 합의 후,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19.6월 협상을 개시하였고, 이후 2년 4개월간 5차례 공식협상*, 수석대표 및 회기간 협상 등을 통해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21.10.26 일에 상품, 원산지, 통관, 경쟁, 경제협력 등 12개 챕터 및 시장개방에 합의하여 최종 타결성과를 도출함.

* (1차) '19.6.4~5 (2차) '19.7.15~17 (3차) '19.8.12~14 (4차) '19.9.10~13 (5차) '20.1.29~31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필리핀 FTA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양국이 함께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아울러 “백신,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해외감축을 포함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미래산업인 헬스케어, 전기자동차, 희소금속, 스마트팜,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언급하였음.